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형민 과장(2110-5221), 김태현 사무관(2110-4713)

산업부,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확대 등 규제개선 추진

-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 완화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기업 **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**을 위하여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**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**으로 **전환**하거나 **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**으로 **규제개선을 적극 추진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> · **포지티브** 규제 방식: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
> · **네거티브** 규제 방식: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

□ 산업부는 금년 **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**으로 소관 법령 중 **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**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규제완화 가능성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왔다.

○ 그 결과,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**8개의 규제**를 **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**하기로 하였고,

○ **58개의 규제**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**재검토형 일몰규제**로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(5개 규제는 규제완화와 일몰규제 동시 적용)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.

□ 주요 규제완화 과제로는 **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규제를 완화**하고 **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**하기로 하였다.

○ 먼저, 현재는 **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**이 영위할 수 있는 **부대사업**으로 목욕장업,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**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**되어 있었으나, **'14년 상반기**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**여행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추진**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저렴한 임대료(부지가액의 1%수준) 및 일괄행정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**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**이 현재는 **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%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**되어 있으나, **'13년 하반기**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**"30%이상"으로 완화**하여 기술중심의 중소기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.

□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인·허가 의제처리 사무 확대, 경제자유구역 개발·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,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,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 확대,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, 자유무역지역 반·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관 법령 제·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, **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태현 사무관(☎ 02-2110-47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네거티브 전환수준의 규제완화 주요과제 내용**

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】

(담당자 : 정책기획팀 강환일 事, 2110-3864)

□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·허가 의제처리 사무 확대

현행	○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·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으나, 항만공사법 상 실시계획 승인은 제외
개선	○ 항만공사법의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사항으로 추가 ▶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('13.12월)

□ 경제자유구역 개발-실시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

현행	○ 실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도 동시 변경되는 경우, 사도지사와 산업부장관 각각의 승인 필요 * 승인권자 : (개발계획) 산업부장관, (실시계획) 시·도지사
개선	○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실시계획 변경 시 산업부장관이 일괄 승인 ▶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('13.12월)

□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규제 완화

현행	○ 경자구역에서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제한* * 목욕장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
개선	○ 영위 가능한 부대사업에 "여행업"을 추가 ▶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('14.상)

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

현행	○ 개발사업시행 대상자* 간 '특수목적법인(SPC)' 설립시, 대상자들의 출자비율이 100%여야 함 * 개발사업시행 대상자 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대기업(투자적정등급이상) 등
개선	○ 대상자들의 출자비율 기준을 50%로 완화 ▶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('13.12월)

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】

(담당자 : 입지총괄과 이윤섭 事, 2110-5303)

□ 산업단지 입주자격

현행	○ '전기 및 증기공급업'은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입주는 가능하나 산업시설구역 입주는 제한
개선	○ 산업시설구역 내 전기 및 증기 공급업(열병합발전소) 입주를 허용 ▶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(2013년 12월)

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】

(담당자 : 산업물류투자팀 서성민 事, 2110-3881)

□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

현행	○ (입주자격)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%이상으로 한정 →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저조 * 7개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현황 : 마산(97.7%), 군산(92.6%), 대불(94.7%), 동해(14%), 율촌(31.2%), 울산(17.2%), 김제(5.6%) ('13.6월)
개선	○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% 이상으로 완화 ⇒ 중소기업 및 국내 U턴기업 유치 촉진 ▶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(2013년 12월)